

『편집위원회 규정』

1990. 9. 10. 제정

2004. 5. 18.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2. 20. 개정

2009. 5. 10. 개정

2010. 4. 23. 개정

2012. 1. 01. 개정

1. 총 칙

- 1) 본 위원회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에 둔다.

2. 구 성

- 1)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및 편집간사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학술 연구실적이 우수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활 동

-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관련 출판물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기준을 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논문 심사 기준

- 1) 논지 전개 of 논리성과 타당성(20점)
- 2) 논거 제시의 적절성과 명료성(20점)
- 3) 내용의 독창성(20점)
- 4) 학문적 기여도(20점)
- 5)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도(10점)
- 6) 표현의 명확성과 형식의 일관성(10점)

5. 논문 심사 절차

- 1) 심사위원 자격: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연구활동이 뛰어난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 심사위원 Pool에 등재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 3)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그리고 본 연구소 논문 심사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 4)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A, B, C, D, E의 5등급으로 판정하여 해당 난에 표시한다.

등 급 항목배점	A+	A	B+	B	C+	C	D+	D	E+	E
20 점	20	18	16	14	12	10	8	6	4	2
10 점	10	9	8	7	6	5	4	3	2	1

- ① 심사서 각 항목의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판정, 심사평, 수정요구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란을 비워둔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5) 심사판정 및 재심: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가지고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린다. 심사결과의 판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게재불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 ②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③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④ 게재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인 경우
- 6)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수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게재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투고자에게 최종 논문원고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그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 7)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거나 표절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규정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를 통한 모든 학술적 결과물들의 간행과 관련한 행위들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3조(시행지침)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연구 결과물을 투고, 게재하는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와 발표, 그리고 연구심사 및 평가 행위 등의 각 행위에서 발생하는 위조 · 변조 · 표절 · 중복게재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투고자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4. ‘중복게재’는 이전에 국내 · 외에서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를 게재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면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6. 이 밖에,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심사나 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명예 훼손이나 인신공격 등은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제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부정행위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제보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6조(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윤리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사항 발생 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별 편집위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시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제7조(윤리심의위원회의 임무) 윤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해자, 증거자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2. 윤리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사기간 동안 그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윤리심의위원회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단계를 거친 후,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조사” 절차를 밟는다. 조사 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제8조(연구 부정행위 예비 조사) 윤리심의위원회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비 조사를 시행한다.

1. 예비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 조사를 행한 위원들은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본 조사 실시의 필요성 여부 및 근거를 조사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예비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윤리심의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1. 위원회는 본 조사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위원회의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논문 투고자는 부정행위 공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논문목록 및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홈페이지와 차기 간행되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를 통해 표절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지한다.
4. 표절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절 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부 칙(제정 2008.2.2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이베로아메리카연구』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작성양식

I. 논문투고

1. 본지의 게재대상은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스페인포르투갈어권 제 분야의 논문으로, 본지 이외의 간행물(온라인 포함)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계획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2. 동일 필자가 한 호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는 전자우편(iberamericana@snu.ac.kr)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채택 여부, 게재순서 및 체제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본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있다. 저자의 투고행위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내·외부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실어 공개할 수 있다.
6. 『이베로아메리카연구』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하며 논문은 수시 접수한다.

II. 논문작성 방법 - 개요

1. 원고작성순서

- 1) 제목
- 2) 투고자 성명과 소속
- 3) 초록(논문 작성어 초록 및 영문 초록)
- 4) 핵심어
- 5) 본문

6) 참고문헌

부록(부록을 첨부하는 경우만 해당)
투고자 인적사항
논문투고 일자

2. 외래어 · 외국어 표기법

- 1)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어 발음을 충실하게 적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스페인어의 자음 c, p, q, t는 경음으로 표기한다.

Comala: 꼬말라

Pedro: 뻬드로

Quijote: 끼호떼

Azteca: 아스떼까

- 2) 그러나 ce, ci와 자음 s는 경음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Cecilia: 세실리아

Sigüenza: 시구엔사

Matos: 마토스

- 3) 관용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Perú: 페루

Argentina: 아르헨티나

Guatemala: 과테말라

3. 주(註)

- 1)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본문의 주는 ‘괄호 주’만 허용한다.

- 2) 괄호 주의 기본 형식: (저자명 출판년도, 인용페이지)

(송기도 2003, 132-135)

(Mignolo 2002, 98)

- 3) 단, 부연설명 등 본문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 재인용에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II. 논문작성 방법 - 세부 규정

1. 저자명, 소속, 연구비 출처 등

- 1) 단독연구 논문의 경우: 논문필자명, 단독/필자의 소속
홍길동
단독/○○대학교
- 2)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명을 맨 앞에 위치시키고, 그 외의 경우는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기명한다. 또 상세한 참여 구분은 논문 첫 쪽에서 저자명에 대한 각주로서 처리하되, 각주번호를 별표(*)로 선택한다.
김인수 · 이유리*
공동/○○대학교 · ○○대학교
(각주란)* 연구책임자: 김인수, 공동연구원: 이유리
- 3) 연구비 출처, 논문 발표 사실, 그리고 감사의 말 등을 명기할 경우에는 논문 첫 쪽에서 논문 제목에 각주를 붙이되, 각주번호를 별표(*)로 선택한다.

2. 초록, 핵심어

- 1) 초록에서는 논문 저자의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나중에 쓰며, 성 뒤에는 쉼표(,)를 붙인다.
Hong, Kil-Dong
- 2) 초록은 논문작성어초록과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국문논문은 국문/영문초록, 스페인어논문은 스페인어/영문, 영문논문은 영문/제2외국어초록. 각 초록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 3) 논문의 핵심어(Key Words)는 5개 내외로하며 각 초록의 하단에 기입한다.

3. 본문

1) 본문 제목의 번호: 서론, 본문, 결론 등 각 장의 제목에는 로마자 대문자(I, II, III 등)로 번호를 붙인다. 장 하위의 소제목에는 각각 1, 1), (1)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2) 본문에서 인용의 출처 또는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법

- (1) 기본 양식: (저자 출판년도, 페이지)
- (2) 저자 이름을 본문에서 언급할 경우
김창민은(1999, 14)
- (3) 저자 이름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을 경우
(Gilroy 1992, 37-38)
- (4) 저자가 두 명일 때
(곽재성 · 우석균 2000, 47)
(Hardt and Negri 2000, 276)
- (5)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et al.’ 사용.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6) 2권 이상의 책을 참고한 경우는 쌍반점(;)으로 구분
(Cueva 1988, 45; Touraine 1989, 22-23)
- (7) 동일인이 같은 해에 쓴 저작을 포함하는 경우는 알파벳 소문자로 구분
(Lacan 1974a, 22-23)

3) 인용

- (1) 직접 인용: 3줄 이내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마침표는 인용출처 뒤에 표시한다.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Mandel 1975, 365).
- (2) 직접 인용: 3줄 이상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용 단락을 사용한다. 이때 상하 행씩 비우고 좌우 20포인트씩 여백을 준다. 이때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며, 인용 부호(“ ”)도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는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괄호 주로 표시하고 마침표는 인용출처 앞에 표시한다.

한 편의 시에는 통계자료, 편지의 일부, 신문 사설, 신문

기사, 역사 기록, 문서, 재담, 일화처럼 예전에는 시가 아닌
산문의 고유 자질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
다.(Benedetti 1972, 87-89)

- (3) 인용문 안에 인용문을 넣을 경우: 큰따옴표 안에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4. 본문 작성에서 사용하는 약물(각종 문장 부호)

1) 소괄호 ()

- (1) 원어를 병기하거나 설명 등을 넣을 때
보르헤스(Borges)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빙모(氷帽, polar cap)
- (2) 책의 출판년도를 밝힐 때
『혼종문화론 *Culturas híbridas*』(1996)
- (3)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Stone 1990, 37-38)
(송병선 2001, 36; 김현균 2000, 37)

2) 대괄호 []

- (1) 바깥의 괄호 본문의 용어와 독음이 다른 말을 보충할 경우와 괄호 안
에 다시 소괄호가 들어가는 경우
(예: 말[言])
- (2) 인용문을 중략할 경우
시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지요.[...] 시를 통해 모
든 것을 말할 수 있으니 이젠 단편도, 소설도, 에세이도 불필요합니다.
- (3) 인용문에서 오타나 오류를 발견하여 [sic]을 덧붙일 경우
……en el totum revolutis [sic] de la política nacional

3) 겹낫표『』

- (1) 단행본(연감, 백서, 소설, 시집 등)의 책명
『스무 편의 사랑의 노래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2006)

- (2) 서양문헌일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지구의 균형 *Earth in the Balance*』(1992)

Revista Iberoamericana

The Times

4) 홑낫표「」

- (1) 논문 제목, 노래 제목, 시 제목, 단편소설 제목, 법령(공식 명칭), 보고서

「라틴아메리카 혼종문화의 초국가적 맥락」

「바벨의 도서관」

「신법 Nueva Ley」

- (2) 서양문헌일 경우는 큰따옴표“ ” 사용

“Hybridity in a Transnational Frame”

“Gracias a la vida”

“The Library of Babel”

- 5) 홑꺼쇠<>: 표와 그림, 영화, 앨범, 연극 등의 제목, 방송 프로그램 명

<표 1>

<아비뇽의 처녀들>

<Table 1>

<Guernica>

- 6) 큰따옴표“ ”: 직접 인용, 신문기사 제목, 토론회 주제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Mandel 1975, 365).

- 7) 작은따옴표‘ ’

- (1) 강조, 조례(條例)

바스콘셀로스의 ‘우주 인종’이란 개념은……

(2)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8) 약물 사용 안함

(1) 학술지명, 잡지명(웹진 포함), 신문명(인터넷 신문 포함)

이베로아메리카연구

한겨레21

(2) 토론회(세미나)명, 단체명,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AP연합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KBS

Televisa

9) 줄표 —: 부연 또는 보충할 내용 앞말의 정정·변경 등

10) 하이픈(짧은 줄표) -: 연도, 쪽수, 영문 철자 분철 시

2007-2008

29-34

11) 밑줄 _: 논문의 필자가 인용문에서 강조할 경우. 인용문 끝에 ‘(필자 강조)’ 라고 덧붙여야 한다.

시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지요. [...] 시를 통해 모든 것을 말 할 수 있으니 이젠 단편도, 소설도, 에세이도 불필요합니다.(필자 강조)

12) 가운뎃점 ·: 대등한 낱말을 열거할 경우. 특히 열거하는 말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분될 경우

사회·문화·정치·경제

13) 기타

(1) : (쌍점): 소표제로 내세운 술어를 설명할 때

(2) ; (쌍반점): 괄호 안에서 항목 구분할 때

- (3) …… (줄임표): 생략
- (4) ○ (숨김표): 내용 중 일부를 밝히지 않을 때
- (5) □ (빠짐표): 내용 중 일부가 유실되었을 때

5. 참고문헌

- 1) 작성순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번역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 2) 문헌의 배열: 국내문헌, 번역문헌, 동양문헌은 각각 가나다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 3) 약물 사용: 참고문헌의 책명, 논문명, 학술잡지명 등의 약물 표기는 위에서 언급한 본문의 표기법을 준수한다.
- 4) 단행본: 저자(연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한국에서 발간한 책은 출판 장소 생략)

김춘진(1999), 『스페인 피카레스크소설』, 아르케.

이성형(편)(1999),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애버크롬비/어리(1986), 『현대자본주의와 중간계급 자본노동과 계급의 문제』, 김진영/김원동 옮김, 한울.

Robinson, Daniel N.(1990), *Aristotle's Psychology*, NY: Columbia Univ. Press.

Marafioti, Roberto(ed.)(1996), *Culturas nómades*, Buenos Aires: Biblos.

Aries, Philippe(1962),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Robert Baldick(trans.), New York: Vintage Books.

- 5) 학술지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Vol.), 호(No.), 페이지.
이남섭(2000), 「카리브 지역의 사회구조 변동과 사회운동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9, No. 2, pp. 195-233.

Scott, Rebecca(1972), "Economic aid and imperialism in Bolivia," *Monthly Review*, Vol. 24, No. 1, pp. 48-60.

- 6) 편저 수록 논문: 저자(연도), 논문명, 편저자명,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페이지.

송상기(1999), 「콜럼버스와 코르테스: 정복자들」, 이성형(편),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pp. 230-241.

Barnard, Timothy(1993), "Death is not True," John King(ed.), *Mediating Two Worlds*,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pp. 230-241.

- 7) 석박사 학위논문: 저자(연도), 학위논문명, 박사(석사)학위 논문, 대학교명.

권현정(1993), 「마셜 아글리에타의 자본주의 조절이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Noh, Yangjin(1993), "Relativism without Confrontation: Putnam, Rorty and Beyon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 8) 비학술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칼럼.

- (1) 기고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 저자(연도), 기사명, 신문명(게재일자), 게재면

신혜수(2008), "여성가족부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 한겨레신문 (2008.1.10.), 31면.

Baca, Mickey(1997), "A Massachusetts Law Squeezes Sellers," *New York Times*, August 17, p. 43.

- (2)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밝힌다.

"춤추는 대학입시," 한국교육신문(1996.3.6.), 2면.

- 9) 학술대회 자료

- (1) 자료집 명 있는 경우

최병선(1993), 「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환기의 정부과제와 정책』, 한국정책학회 1993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1993. 11. 20).

- (2) 자료집 명 없는 경우

김홍우(1996),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김양희(2005), 「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북아 구상」,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 발표 자료(2005. 3. 8).

10) 인터넷 자료: 저자(연도), 기사명, 웹주소.

Degelman, D. and M. L. Harris(2000), "APA style essentials," http://www.vanguard.edu/psychology/index.cfm?doc_id=796

6. 부록

- 1) 논문 뒤에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참고 문헌에 이어 쪽 나누기를 하여 처리한다.
- 2) '부록'이라는 타이틀은 한글 논문은 '부록'으로, 스페인어 논문은 'Apéndice'로, 그리고 영어 논문은 'Appendix'로 통일하여 적는다. 단, 부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부록 1', '부록 2' 등으로 표기한다.

192

193

7. 투고자 인적사항

- 1) 이름
- 2) 주소
- 3) e-mail

8. 논문 투고 일자

아래와 같은 형식의 논문투고 일자를 첨가한다.

논문투고일: 20○○년 ○월 ○일

『이베로아메리카연구』의 논문 투고 및 편집 관련 제반 문의나 제언이 있으면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전화: 880-4280, Fax: 882-6508, E-mail: iberoamericana@snu.ac.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